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22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 허은아 · 황보승희 · 김영식

한무경 · 송언석 · 추경호

임이자 · 김기현 · 박대수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별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의 개인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 파기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위치정보 유출 방지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와 개인위치정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개인위치정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보유의 목적
- 2.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및 보유 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이 반영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u>와 개인위치정보</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	는 제공) ①
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	
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	
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u>	4. <u>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u>

기간

5.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생 략)

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 인자료와 개인위치정보-----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 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 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 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 방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 다.

-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제공 및 보유의 목적
- 2.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및 보유 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기간
-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에 관한 사항
-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신 설>

<신 설>

<신 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신 설>

5.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음)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 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 관 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 략) <u><신 설></u>

8. ~ 14. (생략)

③ ~ ⑧ (생 략)

2	 	 	 	 	 	-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개
 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
 이 반영된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 14.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